##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4

발의연월일: 2020. 7. 17.

발 의 자:구자근・최형두・정희용

김용판 · 홍석준 · 김영식

송언석 • 권명호 • 양금희

윤재옥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스마트산업단지는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 내 기업 간 데이터를 연결·공유하고 동일 업종·벨류체인 기업들이 연계 및 스마트화 되는 산업단지로 우리나라 제조혁신을 견인할 성장토대임.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기반 사회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만큼 ICT 분야 최고수준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과 함께 선제적 투자전략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산업단지 도입과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빅데

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팩토리를 비롯하여 제조 혁신을 위한 스마트제조의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정보를 산업 플랫폼을 기반으로 연계·활용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산단 선 도 프로젝트 추진을 국정과제로 공표하고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스마트산업단지의 개념과 정의를 명시하고 정부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며 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사업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45조의9부터 제45조의9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4호의2 및 제1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4의2. "스마트산업단지"란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14의3. "스마트산단 촉진사업"이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의 혁신과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45조의12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포함할 수 있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산업단지의 관리, 제45조의13에 따른 스마트산단온라인지원시스템의 관리 및 스마트산단 촉진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산업단

지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고시 할 수 있다. 스마트산업단지 관리지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5장의3을 제5장의4로 하고, 제45조의9부터 제45조의20까지를 각각 제45조의20부터 제45조의31까지로 하며, 제5장의3(제45조의9부터 제45조의19)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의3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 제45조의9(스마트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산업단지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의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산업 단지 지정 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스마트산업단지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 2. 스마트산업단지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 3. 연도별 스마트산업단지 추진 계획
  - 4.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5.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 6.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7.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8.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9. 그 밖에 스마트산업단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권자(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기관(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의10(스마트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요 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1.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기업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
  - 2.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건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산업단 지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시설 확충에 적합할 것
  - 3. 입주기업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확충이 필요할 것

-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 되어 있을 것
- 5.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제조기술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45조의11(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 ① 제45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산업단지에 대한 제45조의12에 따른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 사업계획(이하 "스마트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스마트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스마트산업단지를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45조의12(사업시행자) ①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1. 해당 스마트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스마트산업단지 촉 진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 제45조의13(스마트산업단지데이터 수집·처리 등) ① 제45조의12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산업단지 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실시간의 공정 분석 데이터, 생산 실적 데이터, 불량품 데이터, 재고 데이터 및 기타 산업단지 내의 시설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스마트산업단지데이터"라 한다)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 ② 스마트산업단지데이터의 수집·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의14(스마트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스마트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식산업집적지구"를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스마트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기관 및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에 의

- 해 개선되는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
- ② 스마트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입주시설에 관하여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스마트산업단지"로 본다.
- 제45조의15(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스마트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제45조의16(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스마트산업단지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5조의17(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스마트산업단지에서 연구·개발 또는 치안·안보·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 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5조의18(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① 제45조의12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5조의12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9(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제45조의12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 통신설비를 스마트산업단지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산업단지 서비스 중 비영리 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45조의20(종전의 제45조의9)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제45조의13에"를 각각 "제45조의24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14에"를 "제45조의25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45조의19에"를 "제45조의30에"로 한다.

제45조의21(종전의 제45조의10)제1항제3호 중 "제45조의20에"를 "제45조의31에"로 한다.

제45조의24(종전의 제45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5조의9 제1항의"를 "제45조의20제1항의"로 한다.

제45조의25(종전의 제45조의14) 중 "제45조의13에"를 "제45조의24에" 로 한다.

제45조의28(종전의 제45조의17)제1항 중 "제45조의13제1항"을 "제45조

의24제1항"으로 한다.

제45조의31(종전의 제45조의20)제1항 중 "제45조의13의"를 "제45조의2 4의"로 한다.

제55조제2항제10호 중 "제45조의9제3항을"을 "제45조의20제3항을"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에"를 "제45조의20에"로 한다.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제45조의9에"를 "제45조의20에"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 M24(89)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5) 5) -1 (5)            |
| 1. ~ 14. (생 략)      | 1. ~ 14. (현행과 같음)          |
| <u> &lt;신 설&gt;</u> | <u>14의2. "스마트산업단지"란 산</u>  |
|                     | 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
|                     | 개선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
|                     | 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
|                     |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을 통하            |
|                     | 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            |
|                     |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
|                     |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            |
|                     | 스를 입주기업에게 제공하는             |
|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로서 제4            |
|                     | 5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산업           |
|                     | 단지를 말한다.                   |
| <u>&lt;신 설&gt;</u>  | <u>14</u> 의3. "스마트산단 촉진사업" |
|                     | 이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            |
|                     | 조기술의 혁신과 산업단지 기            |
|                     | 반시설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            |
|                     | 45조의12에 따른 사업시행자           |
|                     | 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며,            |
|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포             |
|                     | 함할 수 있다.                   |
|                     | <u>원원 T 있다.</u>            |

15. ~ 23. (생 략)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①
・② (생 략)
<<u>신</u> 설>

<신 설>

<신 설>

15. ~ 23. (생 략) 15. ~ 23. (현행과 같음)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①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 트산업단지의 관리, 제45조의13 에 따른 스마트산단온라인지원 시스템의 관리 및 스마트산단 촉진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산업단지 관리지침 을 수립하고 고시 할 수 있다. 스마트산업단지 관리지침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 한다.

제5장의3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제45조의9(스마트산업단지의 공 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산업단지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내 산업단 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 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 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 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받고 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스마트산업단지 지정 요청 서(이하 "지정요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1. 스마트산업단지 대상 산업단

   지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

   전방향
- 2. <u>스마트산업단지 대상 산업단</u> <u>지의 기본현황</u>
- 3. 연도별 스마트산업단지 추진 <u>계획</u>
- 4.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

   술 혁신 및 그와 관련된 다양

   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5.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 6.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 7.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

   경 개선에 관한 사항
- 8.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 추

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9. 그 밖에 스마트산업단지를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받고 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산업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 다), 관리권자(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기관(제2조제17호 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이 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의10(스마트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스마트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 1. 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기

   업환경 개선이 필요할 것

2. 산업단지의 입지현황 등 여 건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시설 확충에 적합할 것

- 3. 입주기업에 대한 제조기술 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된 다 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존의 산업단지 기반 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확 충이 필요할 것
-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 되어 있을 것
- 5.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제조기술혁신 도모 및 그와 관련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시급할 것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스마트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11(스마트산업단지 촉진 사업) ① 제45조의10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산업단지에 대한 제45조의12에 따른 스마트산업 단지 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u><신 설></u>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 사업계획(이하 "스마트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스마트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산업단 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스마트산업단지를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5조의12(사업시행자) ① 스마 트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국가·지방자치단체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u>관</u>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신 설>

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스마트산업 단지 촉진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스마트산업단지의 토지

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스마트산업 단지 촉진사업을 목적으로 출 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제45조의13(스마트산업단지데이 터 수집·처리 등) ① 제45조의1 2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정보통 신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산업 단지 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실시간의 공정 분석 데이터, 생 산 실적 데이터, 불량품 데이 터, 재고 데이터 및 기타 산업 단지 내의 시설에서 생산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 설>

정보(이하 "스마트산업단지데 이터"라 한다)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② 스마트산업단지데이터의 수 집·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4(스마트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스마트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식산업집적지구"를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산업집적기반시설"을 "스마트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기관및 스마트산업단지 축진사업에의 개선되는 산업단지 기반시설"로 본다.

② 스마트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입주시설에 관하여는 「노후거 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 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 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쟁 력강화사업지구"를 "스마트산 업단지"로 본다.

<신 설>

제45조의15(익명처리된 개인정보 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스마트산업단지 입주기 업, 지원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 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 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 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 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 니하다.

제45조의16(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스마트산업단지에서 연구·개발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제11호의2를 적용하

<신 설>

지 아니한다.

제45조의17(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스마트산업단지에서 연구·개발 또는 치안·안보·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5조의18(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 ① 제45조의12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스마트 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2항부터 제5 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5조의12에 따른 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 업자가 단독 또는 해당 소프트 웨어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 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에 속하는 회사(「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제5장의3 한국산업단지공단 제45조의9(한국산업단지공단의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 참 여 제한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19(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 ① 제45조의1 2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전기통신서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스마트산업단지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산업단지 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u>제5장의4</u> 한국산업단지공단 <u>제45조의20</u>(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 ③ (생 략) 설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

- ④ 공단은 <u>제45조의13에</u>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 으로 조달한다.
- 1. (생략)
- 2. <u>제45조의13에</u> 따른 사업의 수익금
- 3. 제45조의14에 따른 차입금
- 4. <u>제45조의19에</u>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 5. (생략)
- ⑤ (생략)
- 제45조의10(정관) ① 공단의 정관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 1. 2. (생략)
  - 3.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지부 (支部), 연수원, <u>제45조의20에</u>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 11. (생략)

② (생략)

제45조의11(임원 등) (생 략)

| 2 H 0 / U 0 / U 0 / E        |
|------------------------------|
| <u>ㅇ</u> )                   |
| ④ <u>제45조의24에</u>            |
|                              |
|                              |
|                              |
| ·<br>1. (현행과 같음)             |
| 2. 제45조의24에                  |
| 2. <u>~10.22.72.1.11</u>     |
| 3. 제45조의25에                  |
|                              |
| 4. <u>제45조의30에</u>           |
|                              |
| 5. (현행과 같음)                  |
| ⑤ (현행과 같음)                   |
| <u>제45조의21</u> (정관) ①        |
|                              |
|                              |
| 1.•2. (현행과 같음)               |
| 3                            |
| 제45조의3                       |
| <u>1에</u>                    |
|                              |
|                              |
| 4. ~ 11. (현행과 같음)            |
| ② (현행과 같음)                   |
| <u>제45조의22(임원 등) (현행 제45</u> |
| 조의11과 같음)                    |
|                              |

| <u>제45조의12</u> (이사회) (생 략)           | <u>제45조의23</u> (이사회) (현행 제45조    |
|--------------------------------------|----------------------------------|
|                                      | 의12와 같음)                         |
| <u>제45조의13</u> (사업) ① 공단은 <u>제45</u> | <u>제45조의24</u> (사업) ① <u>제45</u> |
| <u>조의9제1항의</u> 목적을 달성하기              | 조의20제1항의                         |
|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                                  |
| 한다.                                  | <u>.</u>                         |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제45조의14(자금의 차입) 공단은                  | <u>제45조의25</u> (자금의 차입)          |
| <u>제45조의13에</u> 따른 사업을 위             | 제45조의24에                         |
| 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                      |                                  |
|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                     |                                  |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                     |                                  |
| 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
| <u>제45조의15</u> (비용부담) (생 략)          | <u>제45조의26</u> (비용부담) (현행 제45    |
|                                      | 조의15와 같음)                        |
| <u>제45</u> 조의 <u>16</u> (예산과 결산) (생  | <u>제45조의27</u> (예산과 결산) (현행      |
| 략)                                   | 제45조의16과 같음)                     |
| <u>제45조의17</u> (업무의 지도·감독) ①         | <u>제45조의28</u> (업무의 지도·감독) 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제45조</u>               | 제45조                             |
| 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단                    | 의24제1항                           |
| 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                    |                                  |
| 하다고 인정하면 공단에 대하                      |                                  |
| 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                     |                                  |
| 령을 할 수 있다.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45조의18(출연 및 보조금) (생 제45절략)
- <u>제45조의19</u>(채권의 발행) (생략)
- 제45조의20(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5조의13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와 그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 ④ (생 략)
- 제55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9. (생략)
  - 10. <u>제45조의9제3항을</u>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1. (생략)
  - ③ (생 략)

| <u>제45조의29</u> (줄연 및 보조금) (현               |
|--|
| 행 제45조의18과 같음)                             |
| <u>제45조의30</u> (채권의 발행) (현행                |
| 제45조의19와 같음)                               |
| 제45조의31(산하기관) ①                            |
| 제45조의24의                                   |
|  |
|  |
|  |
|  |
|  |
|  |
| -,   |
| <br>② ~ ④ (현행과 같음)                         |
| <br>② ~ ④ (현행과 같음)<br>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
|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br>②                  |
|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br>②                  |
|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br>②<br>              |
|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br>②<br>              |
| 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br>②<br>              |